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허영
송옥주 · 김기표 · 장경태
이연희 · 임오경 · 조정식
김남희 · 최혁진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제22조(벌칙)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 3. · 4.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